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1)농정개발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	
3000	경제개발비	200,548,091	187,733,381	12,814,710	[국 [균	13,900,077 8,269,101	도 기	12,511,461 806,349	교 시	245,540 164,815,563
3100	농수산개발비	53,930,106	47,229,077	6,701,029	[국 [균	11,045,204 2,092,242	도 기	7,998,265 804,018	교 시	245,540 31,744,837
3110	농정개발	21,778,574	15,026,600	6,751,974	[국 [균	7,856,924 466,000	도 기	1,692,159 454,072	교 시	196,937 11,112,482
3111	농정개발사업	3,458,636	3,483,340	△24,704	[국 [균	321,700 0	도 기	263,321 0	교 시	196,937 2,676,678
200	사업예산	1,828,808	1,853,512	△24,704	[국 [균	321,700 0	도 기	263,321 0	교 시	196,937 1,046,850
210	보조사업	1,386,808	1,411,512	△24,704	[국 [균	321,700 0	도 기	263,321 0	교 시	196,937 604,850
	301 일반보상금	1,301,856	1,326,560	△24,704						
		1,050,456	1,075,160	△24,704						
						02 장학금및학자금				
						○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				
						경정(418,000,000원x1식)-기정(380,000,000원x1식)			=	38,000
						(국)				19,000
						(도)				5,700
						(시)				13,300
						○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(이양)				
						경정(632,456,000원x1식)-기정(695,160,000원x1식)			=	△62,704
						(도)				△13,168
						(교)				△18,811
						(시)				△30,725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1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2)농산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112	농산사업	13,075,668	6,535,243	6,540,425	[국 7,465,208 도 396,230 교 0 ] [균 22,000 기 0 시 5,192,230 ]
200	사업예산	12,744,079	6,203,654	6,540,425	[국 7,465,208 도 396,230 교 0 ] [균 22,000 기 0 시 4,860,641 ]
210	보조사업	9,845,271	3,304,846	6,540,425	[국 7,465,208 도 396,230 교 0 ] [균 22,000 기 0 시 1,961,833 ]
	202 여비	14,625	13,505	1,120	
		9,025	7,905	1,120	01 국내여비 ○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경정(20,000원x4명x50일)-기정(20,000원x4명x36일) = 1,120 (국) 1,049 (시) 71
	301 일반보상금	7,105,485	608,600	6,496,885	
		7,099,885	603,000	6,496,885	12 기타보상금 ○ 폐비닐수거 보상금 경정(100,000원x300톤)-기정(100,000원x480톤) = △18,000 (국) △6,960 (시) △11,040 ○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(769ha) 경정(351,765,000원x1식)-기정(294,000,000원x1식) = 57,765 (국) 57,765

과	목	예 산 액	기 정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(고정직불금)(제45조) 6,441,601,000원x1식 = 6,441,601 (국) 6,441,601
					○ 조건불리직불제사업(666ha) 경정(266,319,000원x1식)-기정(250,800,000원x1식) = 15,519 (국) 10,863 (도) 1,397 (시) 3,259
	302 이주및재해 보상금	42,420	0	42,420	
		42,420	0	42,420	02 재해보상금 ○ 6.8우박피해 농가 지원(제45조) - 우박피해 복구비(330호) 42,420,000원x1식 = 42,420 (도) 42,420
	402 민간자본이 전	2,648,856	2,648,856	0	
		2,648,856	2,648,856	0	01 민간자본보조 ○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(곡물건조기) 경정(7,000,000원x14대x50/100) - 기정(7,000,000원x14대x50/100) = 0 (도) 2,630 (시) △2,63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5)유통특작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기	
3115	유통특작사업	3,098,061	2,868,808	229,253	[국 [균	70,016 44,000	도 기	794,608 454,072	교 시	0 1,735,365
200	사업예산	2,928,250	2,698,997	229,253	[국 [균	70,016 44,000	도 기	794,608 454,072	교 시	0 1,565,554
210	보조사업	2,578,544	2,349,291	229,253	[국 [균	70,016 44,000	도 기	794,608 454,072	교 시	0 1,215,848
	201 일반운영비	1,710	1,380	330						
		330	0	330	02 행사운영비					
					○ FTA기금 농산물 홍보행사용 물품(과일) 구입(제45조)					
					330,000원x1식				=	330
					(기)					330
	202 여비	2,970	1,800	1,170						
		2,970	1,800	1,170	01 국내여비					
					○ FTA기금사업 업무추진여비(제45조)					
					경정(45,000원x2명x33일)-기정(45,000원x2명x20일)				=	1,170
					(기)					1,170
	402 민간자본이 전	2,063,855	1,836,102	227,753						
		2,063,855	1,836,102	227,753	01 민간자본보조					
					○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(승용예취기)					
					경정(9,000,000원x4대x50/100)			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기정(9,000,000원x4대x50/100) = 0
					(도) △2,630
					(시) 2,630
					○ 기업형 가공산업유치(육성) 지원 전액감
					-326,700,000원 = △326,700
					(도) △108,900
					(시) △217,800
					○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농자재구입비(제45조)
					293,148,000원x1식 = 293,148
					(도) 293,148
					○ 우박피해사과 매입지원사업 261,305,000원x1식 = 261,305
					(도) 62,060
					(기) 137,185
					(시) 62,06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개발 세항:(3116)농산물도매시장운영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116 농산물도매시장운영	911,547	904,547	7,000	
	100 경상예산	861,238	854,238	7,000	
	110 인건비	557,957	550,957	7,000	
	101 인건비	557,957	550,957	7,000	
		281,501	276,501	5,000	01 기본급 ○ 기본급 경정(281,501,000원)-기정(276,501,000원) = 5,000
		64,670	62,670	2,000	08 기타직보수 ○ 청원경찰 경정(64,670,000원)-기정(62,670,000원) = 2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진흥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시	기
3120	축수산진흥	26,127,163	26,178,108	△50,945	[국 2,851,908 [균 1,558,242]	도 6,106,502 기 349,946]	교 21,240 시 15,239,325]		
3121	축산진흥사업	2,675,014	2,500,150	174,864	[국 284,508 [균 28,242]	도 440,982 기 277,946]	교 0 시 1,643,336]		
100	경상예산	189,152	188,912	240	[국 9,441 [균 0]	도 0 기 0]	교 0 시 179,711]		
110	인건비	23,147	22,907	240	[국 9,441 [균 0]	도 0 기 0]	교 0 시 13,706]		
	101 인건비	23,147	22,907	240					
		10,241	10,001	240	08 기타직보수 ○ 공익수의사 위험수당 30,000원x1명x8월 = 240				
200	사업예산	2,485,322	2,310,698	174,624	[국 275,067 [균 28,242]	도 440,982 기 277,946]	교 0 시 1,463,085]		
210	보조사업	1,801,387	1,626,763	174,624	[국 275,067 [균 28,242]	도 440,982 기 277,946]	교 0 시 779,150]		
	301 일반보상금	250,362	253,042	△2,680					
		250,362	253,042	△2,680	12 기타보상금 ○ 한우클러스터사업 경정(67,340,000원x1식)-기정(70,020,000원x1식) = △2,680 (도) △613 (균) △2,042 (시) △25				
	307 민간이전	363,775	356,504	7,271				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363,775	356,504	7,271	02 민간경상보조 ○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경정(25,831,000원x1식)-기정(18,560,000원x1식) = 7,271 (도) 1,818 (시) 5,453
	402 민간자본이 전	1,056,836	886,803	170,033	
		1,056,836	886,803	170,033	01 민간자본보조 ○ 경북 명품축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600,000,000원x50/100 = 300,000 (도) 150,000 (시) 150,000 ○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경정(146,709,000원x1식)-기정(294,276,000원x1식) = △147,567 (도) △12,800 (기) △115,567 (시) △19,200 ○ 축분비료생산비 지원 경정(99,000,000원x80/100)-기정(77,000,000원x80/100) = 17,600 (도) 5,280 (시) 12,32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사업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122	해양수산사업	20,230,078	20,455,887	△225,809	[국 2,567,400 도 5,365,520 교 21,240 ] [균 1,530,000 기 72,000 시 10,673,918 ]
100	경상예산	382,180	482,180	△100,000	
120	경상적경비	379,626	479,626	△100,000	
	201 일반운영비	275,186	375,186	△100,000	
		235,186	335,186	△100,000	01 일반운영비 ○ 3.공공요금및제세 - 바다모래(규사)채취 해양환경영향연구 감정 전액감 -100,000,000원 = △100,000
200	사업예산	19,018,652	19,018,492	160	[국 2,567,400 도 5,365,520 교 21,240 ] [균 1,530,000 기 72,000 시 9,462,492 ]
210	보조사업	17,749,199	17,749,199	0	[국 2,567,400 도 5,365,520 교 0 ] [균 1,530,000 기 72,000 시 8,214,279 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1,867,579	11,867,579	0	
		11,832,099	11,832,099	0	01 시설비 ○ 북부해수욕장 화장실, 샤워장, 탈의장 신축 경정(486,599,000원x1식)-기정(486,599,000원x1식) = 0 (국) 174,000 (시) △174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220 자체사업		1,269,453	1,269,293	160	[국 0도 0교 21,240] [균 0기 0시 1,248,213]
	307 민간이전	40,000	60,000	△20,000	
		40,000	60,000	△20,000	08 이차보전금 ○ 어가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경정(40,000,000원)-기정(60,000,000원) = △20,000
	308 자치단체등 이전	45,560	25,400	20,160	
		34,560	14,400	20,160	08 기타부담금 ○ 불법어업단속(과징금부과분)기관보조금 지급 경정(1,200,000원x96건x30/100) - 기정(1,200,000원x40건x30/100) = 20,160
400 예비비등		829,246	955,215	△125,969	
420 기타		829,246	955,215	△125,969	
	802 반환금기타	829,246	955,215	△125,969	
		474,144	476,673	△2,529	01 국고보조금반환금 ○ 2005년 3.4~3.6폭설피해복구 4,665,000원 = 4,665 ○ 2005년 태풍"나비" 지방어항 피해복구사업 경정(5,862,860원)-기정(9,442,060원) = △3,579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해양수산사업 세세항:(420)기타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2005년 태풍"나비" 소규모어항 피해복구사업 경정(7,375,530원)-기정(10,990,550원) = △3,615
		355,102	478,542	△123,440	02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○ 2005년 3.4~3.6폭설피해복구 830,000원 = 830 ○ 2005년 태풍"나비" 지방어항 피해복구사업 경정(7,375,970원)-기정(3,796,330원) = 3,580 ○ 2005년 태풍"나비" 소규모어항 피해복구사업 경정(6,891,390원)-기정(1,772,230원) = 5,120 ○ 2006년 지방어항 시설사업 전액감 -32,216,000원 = △32,216 ○ 2006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전액감 -139,716,000원 = △139,716 ○ 2005년 지방어항 시설사업 14,835,440원 = 14,836 ○ 2005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24,126,000원 = 24,126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비 세항:(3213)국제협력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00	지역경제개발비	22,287,981	18,948,604	3,339,377	[국 702,843 도 943,551 교 0 ] [균 3,848,000 기 2,331 시 16,791,256 ]
3210	지역경제개발	17,578,570	14,265,713	3,312,857	[국 674,843 도 326,180 교 0 ] [균 2,831,000 기 0 시 13,746,547 ]
3213	국제협력	616,410	678,770	△62,360	
100	경상예산	251,910	278,037	△26,127	
110	인건비	0	6,127	△6,127	
	101 인건비	0	6,127	△6,127	
		0	6,127	△6,127	10 일시사역인부임 ○ 국제통상관련 일시사역인부임 전액감 -6,127,000원 = △6,127
120	경상적경비	251,910	271,910	△20,000	
	201 일반운영비	27,350	47,350	△20,000	
		3,000	23,000	△20,000	02 행사운영비 ○ 무역투자마트 행사 - 참가업체 시설장비 임차료 전액감 -20,000,000원 = △20,000
200	사업예산	364,500	400,733	△36,233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20 자체사업	364,500	400,733	△36,233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72,100	308,333	△36,233	
		272,100	308,333	△36,233	05 자치단체간부담금 ○ NEAR(동북아 자치단체 연합)운영 부담금 경정(272,100,000원)-기정(308,333,000원) = △36,233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4	과학기술진흥사업	8,460,593	5,099,593	3,361,000	[국 300,000 도 200,000 교 0 ] [균 981,000 기 0 시 6,979,593 ]
200	사업예산	7,889,000	4,528,000	3,361,000	[국 300,000 도 200,000 교 0 ] [균 981,000 기 0 시 6,408,000 ]
210	보조사업	7,759,000	4,398,000	3,361,000	[국 300,000 도 200,000 교 0 ] [균 981,000 기 0 시 6,278,000 ]
	306 출연금	3,681,000	1,000,000	2,681,000	○ 테크노(바이오)정보지원센터 건립사업(국고보조금 매칭) 1,681,000,000원x1식 = 1,681,000 (도) 200,000 (균) 981,000 (시) 500,000 ○ Steel 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(국고보조금 매칭) 경정(1,400,000,000원x1식)-기정(500,000,000원x1식) = 900,000 ○ Steel 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100,000,000원x1식 = 100,000
	307 민간이전	1,128,000	1,048,000	80,000	
		540,000	460,000	80,000	02 민간경상보조 ○ 동해안 에너지·환경기업 육성 특성화사업 지원 60,000,000원x1식 = 60,000 ○ 신·재생에너지 풍력 특성화 대학원사업 지원(포항공대) 20,000,000원x1식 = 20,000 ○ 공학교육 혁신센터 사업(한동대) 10,000,000원x1식 = 10,00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지방대학 혁신역량(NURI)사업지원(포항공대, 한동대) 경정(190,000,000원x1식)-기정(100,000,000원x2식) = △10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2,950,000	2,350,000	600,000	
		2,950,000	2,350,000	600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경정(1,000,000,000원x1식)-기정(500,000,000원x1식) = 500,000 ○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추진 운영분담금 경정(400,000,000원x1식)-기정(300,000,000원x1식) = 10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5)근로복지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기	시	
3215	근로복지사업	1,047,280	1,027,683	19,597	[국 [균	94,843 0	도 기	59,860 0	교 시	0 892,577
200	사업예산	742,701	723,104	19,597	[국 [균	94,843 0	도 기	59,860 0	교 시	0 587,998
210	보조사업	244,663	225,066	19,597	[국 [균	94,843 0	도 기	59,860 0	교 시	0 89,960
	301 일반보상금	73,563	66,966	6,597						
		73,563	66,966	6,597	12 기타보상금 ○ 고용촉진훈련비					경정(73,563,000원x1식)-기정(66,966,000원x1식) = 6,597 (국) 5,277 (도) 660 (시) 660
	307 민간이전	171,100	158,100	13,000						
		63,000	50,000	13,000	05 민간위탁금 ○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장비구입					13,000,000원x1식 = 13,000 (도) 13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6)상가지원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16	상가지원	5,777,870	5,783,250	△5,380	[국 280,000 도 60,000 교 0 ] [균 1,850,000 기 0 시 3,587,870 ]
100	경상예산	147,140	141,140	6,000	
120	경상적경비	147,140	141,140	6,000	
	201 일반운영비	102,340	96,340	6,000	
		23,340	17,340	6,000	01 일반운영비 ○ 3.공공요금및제세 - 중앙상가 실개천 수도요금 1,000,000원x2개소x3월 = 6,000
200	사업예산	5,630,730	5,642,110	△11,380	[국 280,000 도 60,000 교 0 ] [균 1,850,000 기 0 시 3,440,730 ]
210	보조사업	3,854,040	3,869,420	△15,380	[국 280,000 도 60,000 교 0 ] [균 1,850,000 기 0 시 1,664,040 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896,440	3,041,420	△144,980	
		2,893,616	3,037,616	△144,000	01 시설비 ○ 죽도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보완사업 전액감(과목변경) -144,000,000원 = △144,000 (국) △80,000 (시) △64,000
		2,824	3,804	△980	03 시설부대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10)지역경제개발 세항:(3216)상가지원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죽도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보완사업 전액감 -980,000원 = △980
	402 민간자본이 전	957,600	828,000	129,600	
		957,600	828,000	129,600	01 민간자본보조 ○ 죽도시장 시설현대화 마무리 사업(과목변경) 144,000,000원x90/100 = 129,600 (국) 80,000 (시) 49,600
220 자체사업		1,776,690	1,772,690	4,000	
	307 민간이전	36,000	32,000	4,000	
		36,000	32,000	4,000	05 민간위탁금 ○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경정(36,000,000원)-기정(32,000,000원) = 4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2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220	관광진흥	4,709,411	4,682,891	26,520	[국 28,000 도 617,371 교 0 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3,044,709 ]
3221	관광진흥사업	4,709,411	4,682,891	26,520	[국 28,000 도 617,371 교 0 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3,044,709 ]
	100 경상예산	700,853	698,333	2,520	
	110 인건비	207,231	204,711	2,520	
	101 인건비	207,231	204,711	2,520	
		104,719	102,199	2,520	09 일용인부임 ○ 환경미화원(호미곶공원관리) - 체력단련비 경정(960,000원x2명x300%)-기정(960,000원x2명x250%) = 960 - 간식비 경정(100,000원x2명x12월)-기정(85,000원x2명x12월) = 360 - 위험수당 50,000원x2명x12월 = 1,200
200	사업예산	4,000,706	3,976,706	24,000	[국 28,000 도 617,371 교 0 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2,336,004 ]
210	보조사업	2,717,916	2,709,916	8,000	[국 28,000 도 617,371 교 0 ] [균 1,017,000 기 2,331 시 1,053,214 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,491,576	2,487,576	4,0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0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2,205,082	2,201,082	4,000	01 시설비 ○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무대 및 방송시설정비 4,000,000원x1식 = 4,000 (국) 4,000
	405 자산취득비	24,000	20,000	4,000	
		24,000	20,000	4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영상장비 구입 - 비디오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4,000,000원x1식 = 4,000 (국) 4,000
220 자체사업		1,282,790	1,266,790	16,0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,110,120	1,174,120	△64,000	
		887,000	964,000	△77,000	01 시설비 ○ 대전리3.1기념관 독립의사 생가 초가 이영잇기 3,000,000원x1식 = 3,000 ○ 구룡포 일본인 주택 관광자원화 전액감(과목변경) - 공원, 제당 등 복원 -80,000,000원 = △80,000
		217,000	204,000	13,000	04 행사관련시설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200)지역경제개발비 항:(3220)관광진흥 세항:(3221)관광진흥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 호미곶 해맞이축전 임시주차장 방법등 설치 13,000,000원x1식 = 13,000
	402 민간자본이 전	110,000	30,000	80,000	
		110,000	30,000	80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구룡포 공원, 제당 등 복원(과목변경) 100,000,000원x1식x80% = 8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10)산림자원개발

세항:(3311)녹지행정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초
3300	국토자원보존개발비	60,328,876	57,737,735	2,591,141	[국 1,965,604 [균 2,328,859	도 2,774,851 기 0	교 0 시 53,259,562	]
3310	산림자원개발	13,731,674	13,732,564	△890	[국 1,885,604 [균 2,028,859	도 1,068,805 기 0	교 0 시 8,748,406	]
3311	녹지행정	6,735,744	6,714,134	21,610	[국 25,060 [균 1,000,000	도 213,755 기 0	교 0 시 5,496,929	]
100	경상예산	223,135	222,775	360	[국 19,220 [균 0	도 2,294 기 0	교 0 시 201,621	]
120	경상적경비	149,165	148,805	360				
	202 여비	43,830	43,470	360				
		43,830	43,470	360	01 국내여비 ○ 주요업무추진여비(증원:1명) 20,000원x1명x9일x2월		=	360
200	사업예산	6,512,609	6,491,359	21,250	[국 5,840 [균 1,000,000	도 211,461 기 0	교 0 시 5,295,308	]
220	자체사업	4,031,711	4,010,461	21,250			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21,250	0	21,250				
		21,250	0	21,250	05 자치단체간부담금 ○ 산불진화진입도로개설 시비부담금 21,250,000원x1식		=	21,250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12	산림관리사업	6,995,930	7,018,430	△22,500	[국 1,860,544 도 855,050 교 0 ] [균 1,028,859 기 0 시 3,251,477 ]
100	경상예산	239,426	216,426	23,000	[국 17,478 도 3,778 교 0 ] [균 0 기 0 시 218,170 ]
120	경상적경비	168,975	145,975	23,000	
	201 일반운영비	142,275	119,275	23,000	
		122,275	99,275	23,000	01 일반운영비 ○ 1.일반수용비 - 수렵장운영 방한모 구입 5,000원x700개 = 3,500 - 수렵장 안내지도 제작 5,000원x700개 = 3,500 - 수렵장운영 홍보물 제작(입간판외 3종) 10,000,000원x1식 = 10,000 - 총기보관용 컨테이너박스 무인경비용역 50,000원x5대x2월 = 500 ○ 7.임차료 - 수렵장 운영 차량 임차료 300,000원x5대x1회 = 1,500 ○ 9.시설장비유지비 - 총기보관용 컨테이너박스 보수 등 1,000,000원x4대 = 4,000
200	사업예산	6,756,504	6,802,004	△45,500	[국 1,843,066 도 851,272 교 0 ] [균 1,028,859 기 0 시 3,033,307 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20 자체사업	894,826	940,326	△45,500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85,750	63,750	22,000	
		85,750	63,750	22,000	05 자치단체간부담금 ○ 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 개선사업 시비부담금 22,000,000원x1식 = 22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778,476	845,976	△67,500	
		772,500	840,000	△67,500	01 시설비 ○ 사방기념공원 표지석설치 및 주변조경공사(제45조) (시책추진보전금 1 0 0 백만원) 100,000,000원x1식 = 100,000 ○ 사방기념공원 토지보상비 22,500,000원x1식 = 22,500 ○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상수도 동력펌프실 제작설치 8,000,000원x1식 = 8,000 ○ 임도개보수(L=3km) 전액감 -200,000,000원 = △200,000 ○ 사방기념공원 통신시설 설치 2,000,000원x1식 = 2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재난관리

세항:(3321)치수및재해대책사업 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20	치수재난관리	1,961,831	1,574,200	387,631	[국 0 도 856,046 교 0 ] [균 300,000 기 0 시 805,785 ]
3321	치수및재해대책사업	1,961,831	1,574,200	387,631	[국 0 도 856,046 교 0 ] [균 300,000 기 0 시 805,785 ]
200	사업예산	1,680,446	1,292,815	387,631	[국 0 도 856,046 교 0 ] [균 300,000 기 0 시 524,400 ]
210	보조사업	1,528,706	1,141,075	387,631	[국 0 도 856,046 교 0 ] [균 300,000 기 0 시 372,660 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887,706	500,075	387,631	
		883,029	498,169	384,860	01 시설비 ○ 태풍 "나리"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공사(곡강천외 3개소) 384,860,000원x1식 = 384,860 (도) 159,346 (시) 225,514
		4,677	1,906	2,771	03 시설부대비 ○ 태풍 "나리"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 공사(곡강천외 3개소) 384,860,000원x0.72/100 = 2,771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30)건설관리

세항:(3332)지역현안도로사업 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30	건설관리	44,635,371	42,430,971	2,204,400	[국 80,000 도 850,000 교 0 ] [균 0 기 0 시 43,705,371 ]
3332	지역현안도로사업	38,922,998	36,718,598	2,204,400	[국 0 도 850,000 교 0 ] [균 0 기 0 시 38,072,998 ]
200	사업예산	38,572,144	36,367,744	2,204,400	[국 0 도 850,000 교 0 ] [균 0 기 0 시 37,722,144 ]
220	자체사업	36,065,304	33,860,904	2,204,4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6,065,304	33,860,904	2,204,400	
		35,100,000	32,900,000	2,200,000	01 시설비 ○ 철강공단~냉천간 도로 개설 경정(1,700,000,000원x1식)-기정(1,500,000,000원x1식) = 200,000 ○ 동대병원~이동간 도로개설(L=1.3km, B=35m) 경정(8,000,000,000원x1식)-기정(6,000,000,000원x1식) = 2,000,000
		65,304	60,904	4,400	03 시설부대비 ○ 지역현안도로사업 시설부대비 2,200,000,000원x0.2/100 = 4,4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400)교통관리비 항:(3410)교통관리 세항:(3411)교통관리사업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기	시
3400	교통관리비	64,001,128	63,817,965	183,163	[국 186,426 [균 0	도 794,794 기 0	교 0 시 63,019,908	0 ]	
3410	교통관리	64,001,128	63,817,965	183,163	[국 186,426 [균 0	도 794,794 기 0	교 0 시 63,019,908	0 ]	
3411	교통관리사업	64,001,128	63,817,965	183,163	[국 186,426 [균 0	도 794,794 기 0	교 0 시 63,019,908	0 ]	
100	경상예산	233,561	231,653	1,908					
110	인건비	39,251	37,343	1,908					
	101 인건비	39,251	37,343	1,908					
		32,550	30,642	1,908	08 기타직보수 ○ 교통전문직 연봉(계약직 "다"급) 경정(32,550,000원)-기정(30,642,000원) = 1,908				
200	사업예산	61,251,467	61,070,212	181,255	[국 186,426 [균 0	도 794,794 기 0	교 0 시 60,270,247	0 ]	
210	보조사업	1,750,994	1,569,739	181,255	[국 186,426 [균 0	도 794,794 기 0	교 0 시 769,774	0 ]	
	301 일반보상금	1,384,117	1,271,129	112,988					
		1,384,117	1,271,129	112,988	12 기타보상금 ○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경정(1,229,040,000원)-기정(1,116,052,000원) = 112,988 (도) 56,494 (시) 56,494				

